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8호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

(2)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라. 통일교육 실태 조사,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등 통일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ykh5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5. 통일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통일교육사업)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실태 조사
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